

진폐고시임금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50호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“진폐고시임금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고용노동부장관

I. 진폐고시임금

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,661원86전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